

학교체육 육성지원비 지급규정

제정 2016. 4. 1
경상북도 승인 2016. 4. 27
개정 2018. 8. 28
승인 2018. 10. 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시·도대항으로 치러지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서 우수성과를 거양 하기 위하여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리 도 관내 소재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및 지도자에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호 기준에 따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지원비를 지급한다.
2. 특수목적교인 경북체육중고등학교의 경기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경기력향상지원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조(재원) 학교체육지원비 지원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분회 세출 예산에 책정된 금액 범위 내
2. 도체육진흥기금, 국비 등 지원사업비

제4조(지급액 결정) 학교체육 육성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

1. 해당학교의 최근 전국종합체육대회 성적, 육성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급범위, 지급금액 등은 별표 1에 의거하여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의 의결로 지원 할 수 있다.
2. 기타 학교와 지급금액에 따른 상호협약서 체결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는 없다.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월 또는 반기별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시기를 정할 수 있다.
2. 개인 수령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등 기관·단체가 될 경우에는 대표(공금)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단위 : 원)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액
경기력향상 지 원 비	•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지도자	500,000이하/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비	• 학교운동부 지도자 (초·중·고·대학)	3,000,000이하/월
	• 학교운동부 (초·중·고·대학)	100,000,000이하/년